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발의】



2019.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5호로 2019년 11월 13일 이규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리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안 제4조~제6조)
- 라.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안 제7조)
- 마.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등(안 제8조, 제9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19. 11. 15. ~ 11.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 ~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내용, 대상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및 관리, 지원 중지
 -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성매매피해자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데 생계유지,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있음. 향후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성매매집결지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의 실태조사,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 ② (생략)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 3. (생략)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생략)